[붙임 1]

2018년도 자격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

1. 모든 응급구조사는(2018년도 이전 자격증 발급자) ‘18.5.29.까지 최초 자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자격신고절차는 [붙임2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(관련근거법령 :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(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)」)

2. 현재 각 소방학교,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성명, 자격급수, 자격번호의 오류자와 중복자가 많아 등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원활한 자격신고는 **‘18.1.15. 이후로 가능합니다.**

3. 자격신고는 3년에 1회이므로 2017년에 자격신고를 한 사람은 2018년에 자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, 다음 자격신고는 2020년에 하여야 합니다. (2018년에 자격신고 한 경우 2021년에 재신고)

4. 자격번호는 ‘**보건복지부 홈페이지-면허민원안내**’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5. 자격신고여부는 자격신고센터 로그인 후 과거이력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6.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닌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협회로 대리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(대한응급구조사협회 1588-1339)

7. 주민등록상의 성명, 생년월일과 자격증(보건복지부)상의 성명, 생년월일이 일치해야만 자격신고센터에 보수교육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명한 사람의 경우 **보건복지부에 개명신고**를 해야 하며, 자격증 재교부 후 협회로 성명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. (보건복지부 홈페이지-면허민원안내)

8. **2017년도 자격증 취득자는 면제신청(사유:신규취득자) 후 ‘18.5.29.까지 자격신고를 완료**해야 합니다. 면제신청절차는 [붙임3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